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김진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서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당정합의에 의하여 1999년 4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문제는 공단이 통지한 신고권장소득에 대한 가입대상자의 반발 및 항의에 의하여 발단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하여 정치권에서 확대적용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행정부의 강한 실행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해결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임기응변적이거나 부분적이어서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 기틀이 마련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입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노력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세부적인 보완조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새로운 계층에 대한 적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가입대상자의 불만과 항의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계층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하여 논란 및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 또는 강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하여 근본적인 정책적 방향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

서 본 발표는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제도확대 추진내용 및 보완대책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의 초점은 1995년 7월에 확대 실시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소득결정 체계의 불공평성을 제거하는 데에 두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농어촌 지역가입자의 문제점으로 소득과약의 불확실성과 가입자의 일방적인 신고소득에 의한 소득결정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하향신고 경향으로 인하여 가입근로자와의 불공평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여, 현재 기존의 신고소득체계를 그대로 도시지역에 확대할 경우 불공평성의 문제로 인한 제도의 기능 왜곡이 더욱 문제될 것으로 판단하였다.¹⁾ 이를 위하여 「신고권장소득방식」을 도입하여 직권결정에 의한 통보방식을 취하였으며, 「업종별 기준소득」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근로자의 평균소득과 일치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표 1> 국민연금 가입계층별 평균소득 비교(1998.11. 현재)

(단위: 천원/월)

계층별	사업장가입자	농어민	비농민지역가입자
평균소득	1,490	640	630
비율	100%	43%	42%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먼저 신고권장소득방식은 소득결정에 있어서 신고주의에 직권결정방식을 도입한 형태로 먼저 공단에서 파악한 자료를 기초로 가입자의 납부의무소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단에서 제시한 소득의 80%미만으로 신고할 경우에 공단 직권으로 80%이상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직권으로 80%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업종별 기준소득」 제도는 적용대상자의 소득자료 보유형태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

1) 국민연금 농어촌 지역 확대 시 정부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자가 신고하는 소득을 공단이 파악한 환산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소득재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거의 모든 가입대상자가 신고소득을 공단이 파악한 소득보다 훨씬 낮게 하향신고 함에 따라 실제에 있어서는 재신고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가입자 일방에 의하여 신고된 소득액을 수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가입근로자와 지역가입자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도시지역 확대적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액은 기존에 가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

신고권장소득의 결정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 자영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업종별 기준소득금액을 신고권장소득으로,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연간근로소득을 그리고 의료보험부과자료보유자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근로원천징수자료가 없는 경우 그리고 과세 및 의료보험자료 미보유자는 중위수 표준소득월액(99만원)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예외를 비롯하여 모든 소득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입증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표 2> 소득유형별 신고권장소득 산정방법

유형별		신고권장소득액	예상규모
과세자 료보유 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록 자영자	# 업종별 기준소득표의 기준금액 * 조정계수 -조정계수: 개인별사업소득금액/동일업종 평균사업 소득금액 (단, 1.0 이상) # 사업소득 345만원 이상: 최고등급(45등급)	93만명 (9.2%)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등록 자영자	# 업종별,급지별 기준소득표의 기준금액	149만명 (14.7%)
	근로소득자	# 연간근로소득액/ 근무월수	228만명 (22.5%)
의료보험부과자료 보유자		# 해당지역(동단위) 거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 * 조정계수 -조정계수: 개인의 의료보험료/해당지역 의료보험료 평균액	254만명 (25%)
자료미보유자 등		권장소득최저액: 중위수 표준소득월액(99만원)	288만명 (28.5%)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그러나 가입대상자의 민원 및 반발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1차 보완조치(1999.2.9)로 소득신고절차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차 보완조치(1999.2.22)로 공공근로요원활용 등을 통한 홍보강화 방안이 마련하였다.

소득신고절차간소화 방안의 내용은 본인 소득입증책임에서 소득신고방식으로 전환하되 공단이 사후에 확인하는 방안으로 사업장 휴·폐업, 학생·군인 및 실직자 그리고 소득변화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이며, 공공근로요원 활용 등을 통한 홍보 강화는 12,000명(소요예산 200억 원)의 공공근로요원을 동원하여 지역의 5-8개 통 단위로 1명씩 배치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제도 홍보 및 가입권유 그리고 신고접수를 직접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대중매체의 활용과 사랑방좌담회 등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독려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계 및 사회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도시지역자 소득과악위원회를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단운영에 개선 모임을 4월부터 구성운영 하고, 신고권장소득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110개 업종을 세분화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가입대상자의 소득접수 현황은 총 대상자 1014만 명중 1999년 3월 6일 현재 약 300만 명(29.4%)에서 3월 15일에는 463만 명(45.6%)으로 늘었으며, 이 중 신고소득자는 3월 6일 113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1.1% (신고자의 37.8%)에서 3월 15일에는 175만 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7.2%로 증가하였다.

<표 3> 소득신고 접수 현황추이

(단위: 만 명)

일자	신고대상	신 고 자			
		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적용제외
3월 6일	1,014	298	113	154	310
		(100%)	(37.8%)	(51.8%)	(10.4%)
(29.4%)		(11.1%)	(15.1%)	(30.6%)	
463		175	236	52	
3월 15일	1,014	(100%)	(37.8%)	(51.0%)	(11.2%)
		(45.6%)	(17.2%)	(23.2%)	(5.1%)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개선추진 대책」 1998. 3. 8.

Ⅲ. 평가 및 문제점 분석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시행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전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소득과악에 대한 기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확고한 실행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모든 가입자로부터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신고권장소득의 소득확정방식에 있어서 보완방안 마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소득과약의 인프라 구축 이전에 적어도 도시지역 가입대상자간의 상대적 소득분포를 체계화함으로써 소득과약 미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보완조치의 강구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 중심의 공단운영체제 구축으로 국민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감 있는 운영이 필수적이며 권위적인 태도와 행정편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단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이러한 선행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가 연기될 경우 전 국민에 대한 후보장으로서 그 위상과 신뢰에 대한 심각한 타격과 치명적인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촉구한 매우 구체적인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시한 보완조치는 단순히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이라는 명제 하에 간단한 부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개발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오히려 국민연금의 진정한 의미를 외면한 채, 오히려 연기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시행이라는 단순 논리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먼저 소득과약을 위한 기본체제 구축을 위한 소득과약위원회의 구성 요구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소득과약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과 동시에, 과거 부정부패 등에 만연되어 있는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천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정부내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에 협의할 것」이라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미 1995년 농어촌 지역 확대과정에서 겪었던 동일한 문제점으로, 당시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자영자 계층에 대한 확대과정에서 소득과약의 한계로 인한 소득하향신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처 없이 도시지역에 확대한 점에 원인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농어민과 자영자에 대한 소득자료로서 국민연금의 소득과약에 기초가 되는 종합적인 자료는 없으며,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소득자료를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검색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부처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득을 파악한다는 자체에 이미 한계점을 내포하고 출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조차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과약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를 위하여서는 농어촌 지역 적용

확대 당시 이미 나타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소득과약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과 또 다른 방식에 의하여 소득과약을 하고 있는 노동부와 근본적인 소득과약체계 구축을 위하여 범 정부 차원의 노력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미흡한 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건복지부는 경험도 없는 인력 및 비용낭비를 초래하는 소득과약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부처이기주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신고권장소득에 대한 비현실성 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조치로 단순히 110개의 업종 분류를 세분화하는 방안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신고권장소득의 보완조치는 소득과약체계의 구축 이전에 가입계층에 대한 상대적 소득 수준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도시지역 확대초기에 제도 정착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미흡한 조치는 향후 제도 정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고권장소득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 자영자의 경우로 소득과약을 위해서 과세자료 및 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과세자료는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소득에 대한 반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소득은 공시지가 이외에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임대여부, 사업장면적, 종업원수, 세부적 입지여건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약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로서도 합당치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영자의 평균사업소득을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으로 상향조정한 점은 공평성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불공평한 조정방식이다.

셋째,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 자영자에게 업종별 기준소득표에 의한 기준소득금액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일괄 적용한 점이나, 과세 및 의보자료 미보유자에 대한 중위수 표준소득 적용은 저소득 대상자에 대한 배려 없이 국민연금의 일괄정액급여제도의 도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의 역재분배 현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네째,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의료보험부과자료의 이용은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보험 부과자료 보유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오히려 금융소득자는 부담에서 제외하는 불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사회보험의 부과체계에 있어

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형평성 차원에서의 논란은 물론 사회보험 부과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미하는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도 실제 국민연금의 목적 및 기능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현재의 미흡한 대책으로 보완하여 시행할 경우에 제도의 왜곡현상과 함께 제도의 모순점이 오히려 고질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마련된 공공근로요원의 활용은 단순히 가입을 권유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먼저 공공근로요원의 성의와 자질로 인한 부작용은 차치 하더라도, 단순히 가입률을 높이는 데에만 치중하여 국민연금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인 소득과약을 등한시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개선요구는 전국민이 공평한 부담을 통하여 적절한 노후보장이라는 단순한 공적연금의 역할 수행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완조치는 오히려 미흡하거나 오히려 왜곡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방안과 보완대책은 기존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는 제도의 답습으로 제도의 미흡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제도정착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존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를 시행할 것으로 확정하였고 재삼 확인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에 대한 보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가입대상자의 민원이 대폭 줄어들었고 소득신고자의 비율도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행 이후에 사회적·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실시하는 방안은 조속한 확대로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노후보장에 대한 불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이로써 전국민에 대한 노후보장이 골고루 이루어져 사회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확대방안으로는 어떠한 개선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남는 다는 것이다. 현재의 신고소득 방식으로 전환된 형태는 하향신고로 인한 불성실신고로 인한 제도의 왜곡 문제와 기종 가입근로자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입대상자의 반발은 그대로 상존 하며, 향후에도 신규가입의 경우와 변동사항의 발생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IV. 대안의 모색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적된 개선조치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종합적인 개선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를 시행할 경우에 대안으로서 현재 소득과약체계의 한계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은 소득과약에 있으며, 소득과약은 근로자와의 소득과약 방식이 다르고 또한 통합에 한계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 선진국 중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의 형태를 응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국민에 대한 소득과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경우에 소득형태가 유사한 계층을 단위로 하여 그 계층에 대한 제도 적용을 별도로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즉 현재 국민연금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근로자 계층과 자영업자 계층 그리고 농어민 계층을 분리하여 소득재분배가 같은 계층 내에서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자 계층간 노후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며, 이러한 방식이 자영업자 계층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농민의 경우 은퇴 이후에도 자신 소유의 농토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 산정 방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그 특성에 맞는 계층 내의 노후보장과 소득보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과약이 정확히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차후에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체제로 다시 통합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와는 달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중 공단이 과약한 소득과 부합되는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계층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공단이 제시한 신고권장소득을 고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과약에 대한 자료를 재점검하고 공단에서 제시한 소득과 일치하는 계층에 대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도 소득과약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때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입이 일찍 이루어질수록 부담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점을 가입대상자가 충분히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제도 확대적용과정에서 처음 적용율이 50%선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적용율에 대한 행정적 책임 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V. 결 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의 확대는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국민에 대한 노후보장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당연한 귀결이며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전국민 확대적용을 단순히 확대 자체를 넘어선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는 다른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및 제도 정착의 중요한 시범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의하여 관리운영된 만큼 소득과약등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불분명했으며, 오히려 의료보험 통합에 의하여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적용대상에 대한 준비를 새로이 하여야 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이 아직 추진 중에 있어 아직 미완성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적용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시도이며 사회보험 발전의 선도적 역할로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적용은 도입 이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해결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이 적용확대로 발생하게 될 더욱 복잡한 문제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소득과약체계의 인프라 구축에 있고, 어떠한 대안도 이 소득과약 문제 해결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소득관련자료가 요구되는 부처 및 기관의 협조자세 및 상호협력을 단호한 의지로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를 계기로 국세청의 정확한 자료 파악과 제공을 통하여 인력 및 경비의 낭비를 없애야 하며, 이러한 성실한 자세와 공평한 자세의 추진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공고히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험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달성하여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 사회보험의 성숙화 기반이 마련될 때 우리는 현 세대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체제의 건강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및 제도개선, 1999.
 ———, 국민연금 확대시행관련 현황과 대책, 1999.3.10.
 최병호, 김진수 외, 국민연금도시지역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김진수,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1999.

ACKERMANN, Walter, Soziale Sicherung in der Industriegesellschaft

- Tendenzen und Konsequenzen -, In Institut für Versicherungswirtschaft an der Hochschule St. Gallen, I. VW-Schriftenreihe, Bd. 5, Bern; Frankfurt/M., 1980.

BUSCH, Georg H./ HANISCH, Wilhelm/Hellmer, Silvia, Wirtschafts- und finanzpolitische Aspekte des österreichische Pensionsversicherung, In: Schriftenreihe des Ludwig Boltzmanninstitutes für Wachstumsforschung, Bd. 8, Wien, 1986.

GAHLEN, B./ HESSE, H./RAMSER, Theorie und Politik der Sozialversicherung, In: Schriftenreihe des wirtschaftswissenschaftlichen Seminars Ottobeuren, Bd. 19, Tübingen, 1990.

HOLZMÜLLER, H.H./ SCHWARZER, S., Krise und Krisenbewältigung, Wien, 1985.

Kim Jin-Soo, Ein soziales Altersversicherungssystem für die Entwicklungsländer(U.A. Korea), Wien, 1992.

SCHMÄHL, Winfried, Alterssicherung und Einkommensverteilung, Tübingen,1977.

ZACKER, Hans F., Bedingungen für die Entstehung und Entwicklung von Sozialversicherung, In: Schriftenreihe für Internationales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d. 3, Berlin, 1979.